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건강보험 이의신청 큰 폭으로 증가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'2009년도 2/4분기 이의신청 발생·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'에 따르면, 이의신청* 제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0.6% 증가한 533건을 기록함.

- o 전체 이의신청 533건 가운데 보험료 부과·조정·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(53%)을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12.7% 증가하였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(25%)으로 전년동기대비 197.7% 증가함.
- o 그 외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한 보험급여 이의신청도 93건(18%)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* 건강보험 이의신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(이의신청), 제77조(심판청구), 제78조(행정소송)에 근거하며, 건강보험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심리·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함.

□ 피부양자 및 가입자 등에 관한 이의신청,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*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는데,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.

* 임의계속가입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, 실직자가 원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는 제도임.

□ 2009년 2/4분기 처리 완료된 건은 총 566건으로 전년 동기 353건에 비해 60.3% 증가하였으며, 결정례*는 인용 57건(10%), 기각 331건(58%), 각하 88건(16%), 취하 90건(16%)으로 나타남.

* 결정례는 인용(신청인의 주장이 있는 건), 기각(원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없는 건), 각하(기간도과 등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건), 취하(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공단이 검토과정에서 처분을 변경,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건) 등임.

□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이의신청 관련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함.

- o 또한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하거나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.

(건강보험 이의신청 대폭 증가,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, 9/14)